

재속프란치스코 미국 국가형제회 규정

Statutes of the National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서론 (Introduction)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불림을 받은 재속프란치스코 미국 국가형제회인 우리는, 형제회의 생활을 돕기 위해, 특히 형제회의 조직과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하고 채택한다.

본 국가형제회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지침은 폐기된다 [참조. 재속프란치스코회 회헌 (이하 회헌), 제7조].

제 1 장 (Section I) 조직과 구조 (Organization and Structure)

제1조. 국가형제회 (National Fraternity)

재속프란치스코 미국 국가형제회 (이하 NAFRA)는:

- 미국 내 상존하는 재속프란치스코회 (이하 SFO)는 [SFO 국제기구의 법적 호칭은 Ordo Franciscanus Saecularis (OFS)] 지구형제회들과 단위형제회들로 구성된 법인체이다 [참조. 교회법, 제116조, 117조] [참조. SFO 회칙(이하 회칙), 제2조; 회헌, 제1조 5항, 제65조 1항; 교회법, 제214조와 303조].
- 합법적으로 선출된 평의회와 회장에 의해서 활성화되며 운영 된다.
- 그 조직과 기능은 교회법과, 재속프란치스코회 규정, 즉, 회칙, 회헌, 예절서, 국제형제회 규정, 국가형제회 규정 등을 따른다 [참조. 회헌, 제4조 1항].

제2조. 행정기구 (Governing Body)

- NAFRA의 행정기구는 국가형제회 평의회이다. 국가형제회 평의회는 휴회 시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는 국가형제회 평의회를 대행 한다 [참조. 회헌, 제66조 1항].
- 국가형제회 영적보조자 협의회는 재속프란치스코회를 구성하는 내부 조직의

하나로서, 행정기구의 심의에 참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NAFRA에 사목적 배려 및 영적 보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참조. 재속프란치스코회 영적보조 규정, 제19조와 제20조].

제3조. 국가형제회 평의회 (National Fraternity Council)

1. 국가형제회 평의회는 지구형제회 회장들,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 국가형제회 영적보조자 협의회원들로 구성된다.
2. 미국 내 재속프란치스코회 관련 모든 업무는 국가형제회 평의회에 의해 수행된다.
3. 또한, 국가형제회 평의회는 입법, 심의, 선거권을 가지며, 국가형제회 내에서 회칙과 회헌에 준거한 유효한 규정이나 법을 만들 수 있다.
4. 국가형제회는 매년 국가형제회 평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 국가형제회 평의회는 국가형제회 회장이 최소한 회의 2개월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5. 국가형제회 평의회는 매 3년 마다 선거총회를 소집하며, 국가형제회 회장은 최소한 2개월 전에 모임의 장소, 선거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6.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1/3 이상의 지구형제회 회장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형제회 평의회는 연중 어느 때든지 소집될 수 있다.
7. 회헌, 제66조 2항에 명기된 임무에 추가하여, 국가형제회 평의회는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 한다:
 - a. 지구형제회의 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이의 수정을 승인 한다 [참조. 부록 A].
 - b. 지구형제회가 NAFRA에 납부할 연간 재정 분담금을 책정한다.

제4조. 재산 관리 구조 (Structure for Property Control)

1. 회헌, 제54조에 따라, NAFRA는 미국 법률과 오하이오 주 법률에 의거 “재속프란치스코 미국 국가형제회”라는 법인체로登記되어 있으며, 1615 Vine Street, Cincinnati, Ohio. 45210에 그 법인사무실을 두고 있다.
2. 국가형제회 평의회에서 선출된 평의원들이 그 법인의 임원 직분을 갖는다.
3. 법인체가 해체될 경우 도서와 기록을 위시한 부동산과 동산, 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은 “직 상급 법인”에 귀속된다 [참조. 교회법, 제123조].
4. NAFRA는 미국 내에 있는 모든 단위형제회들과 지구형제회들의 조직적인 결합체이며, 자체적인 법인체로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단위형제회나 지구형제회도 NAFRA의 구체적인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자체적인 법인체가 될 수 없다.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 설립에 대한 통상적인 요구 때문에, 어떠한 단위형제회나 지구형제회도 국가형제회의 특별한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없다.

5. 회헌, 제54조 3항에 의거하여 각 등급별 형제회들은 반드시 현 평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 매 3년마다 한번씩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감사는 형제회 평의원이 아닌 전문 회계사나 혹은 해당 형제회에 의해 설립된 “감사위원회” (그 형제회의 평의원이 아닌 일반 회원들이 다수결로 선출한 2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됨)에 의해 실시된다. 서면 감사 보고서가 반드시 상급 형제회 평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5조.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 (National Executive Council)

1. 국가형제회 평의회 정규 회합이 열리지 않고 있을 때에는, 선거로 선출된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가 선교와 봉사정신으로 국가형제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목표를 실천에 옮긴다 [참조. 회헌, 제66조 1항].
2.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는 국가형제회 회장, 국가형제회 부회장, 국가형제회 서기, 국가형제회 회계, 최소한 한 명의 국가형제회 평의원, 그리고 국가형제회 국제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국가형제회 영적보조자협의회 회장은 직권에 의해 이 평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국가형제회 양성분과위원회 위원장(들)과 분과위원회 조정관(코디네이터)도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 회합에 참석할 수 있다.
3. 국가형제회 집행평의원은 전원 투표권을 갖는다. 국가형제회 양성분과 위원장(들)과 분과위원회 조정관(코디네이터)은 상담역을 수행한다.
4.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원들의 선출은 국가형제회 규정 제2절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다.
5.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의 임무:
 - a. 국가형제회 차원에서 재속프란치스코회를 조직, 구성, 활성화, 운영, 조정한다.
 - b. 국가형제회 평의회의 결의사항들에 대한 실행여부를 확인한다.
 - c. 국가형제회 규정의 실제적이고, 사목적인 해석을 제공하며, 규정 중 특별히 애매한 점을 명료화 시킨다. 이의 유효 기간은 다음 국가형제회 평의회가 열릴 때까지 이다.
 - d. 회헌이나 국가형제회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긴급한 문제가 생길 경우, 다음 국가형제회 평의회가 열릴 때까지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가 해결한다.
 - e. 지구형제회 평의회에서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어 도움을 청하든가 또는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가 자체적으로 주도한 문제들을 화해의 정신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 f. 지구형제회 평의회가 내린 회원의 제명결정에 대한 항소가 적절한 경우, 이를 심리 한다 [참조. 회헌, 제59조].
 - g. 국가형제회 평의회가 결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 위원회나 분과 위원회를 설립하고 총괄한다.
 - h. 국제형제회 대표들과 국제형제회 영적보조자 협의회 대표들이 형제적 또는 사목적 방문, 선거 주관, 입회를 위해 방문 체류 시, 여행과

체류기간에 적절한 경비를 지불한다.

- i. 국가형제회 평의회가 정기 연례 모임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행사 경비나, 임시비 지출 등, 연간 예산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NAFRA 재무를 수행한다.
6. 국가형제회 평의회가 휴회 중일 때,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는 업무를 전산망 (즉, 이 메일,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결정된 안전이나, 결정은 차기 국가형제회 평의회에서 검토 된 후, 추인되어야 한다.

제6조. 국가형제회 집행평의원들의 임무 (Duties of Officers of the National Executive Council)

1. 국가형제회 회장은 회헌, 제6조에 명기된 임무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 한다:
필요할 때 NAFRA 연간 예산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산에 포함 안 된) 임시비 지출을 승인한다.
2. 국가형제회 부회장의 임무는 회헌, 제52조 1항에 명기되어 있다.
3. 국가형제회 서기는 회헌, 제52조 2항에 명기된 임무 외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에의 지시에 따라 국가형제회의 공문서를 관리, 감독한다.
4. 국가형제회 회계는 회헌, 제52조 4항에 명기된 임무 외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 한다:
 - a. 형제회의 모든 기금이 국가형제회 회계의 수중에 들어올 경우에 이 기금을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가 선정한대로 국가형제회 회계는 NAFRA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 시킨다.
 - b. NAFRA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연간 예산으로 승인된 경비나, 국가형제회 회장 또는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에의 결정에 따르는 경비를 지불한다. 모든 경비는 수표로 지불 한다.
 - c. 연간 예산을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에 제출하여 검토 받고, 국가형제회 평의회에 제출하여 연례 총회에서 검토와 승인을 받는다.
 - d. NAFRA의 회계장부와 기록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가형제회 평의회에 어느 회원이라도 서면으로 회계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당 회계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e. 연간 재무 상태를 수입, 지출, 잔고로 나누어 국가형제회 평의회에 보고 하며, 년 초에는 지난 해 재무 상태를 수입, 지출, 잔고로 나누어 보고 한다.
5. 국가형제회 국제 평의원의 임무는 회헌, 제75조와 국제형제회 규정, 제7조에 명기되어 있다.
6. 국가형제회 영적보조자 협의회 의장은 회헌, 제90조에 명기된 임무 외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 한다:
 - a. 직권 회원의 자격으로 국가형제회 평의회와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에

- 참석하며 이들의 모든 활동에 협력한다.
- b. 국가적 차원에서 형제자매들의 초기양성 및 영속적 양성을 위하여 다른 영적보조자들과 협조 한다 [참조. 회헌, 제90조 3항b].
 - c. 국가형제회 평의회나 집행평의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 재정에 관한 사항과 선거총회에 관한 안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의 투표에 참여 한다.

제 2 장 (Section II) 투표와 직무 수행 (Voting and Conduct of Business)

제7조. 소집 (Convocation)

1. 국가형제회의 정기회의는 국가형제회 회장이 소집하는 국가형제회 평의회 연례 모임으로 한다.
2.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는 국가형제회 평의회 연례 정기회의 중간에 적어도 2번의 회합을 가진다.
3. 국가형제회 평의회는 매 3년마다 선거총회를 갖는다.
4. 국가형제회는 최소 매 5년마다 국가형제회 대회를 거행해야 하며,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것은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가 결정짓고 국가형제회 평의회가 승인한다.
5. 각 지구형제회 회장은 국가형제회 평의회 정기 모임의 개최 최소한 2개월 전에 장소와 날짜 그리고 시간에 관한 통보를 받는다.

제8조. 투표권 (Voting Rights)

1.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 모든 회원들은 본 국가형제회 규정, 제3조 1항에 정의된 대로 투표한다. 영적보조자에게는, 그 지위에 상관없이, 재정 문제 안건이나 [참조. 회헌, 제90조 2항], 선거에 관한 안건에 [참조. 회헌, 제77조, 영적보조자 규정, 제12조 3항] 관한 투표권이 없다. 이 제한은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이나 수도자들을 포함해서 영적보조의 역할을 하는 모두에게 적용된다.
2. 각 지구형제회 회장에게는 국가형제회 평의회에 상정된 선거 및 모든 업무에 관한 안건에서 해당 지구형제회를 대표하여 투표할 수 있는 주된 책임이 부과된다.
3. 대체권 / 대리권
 - a. 국가형제회 평의회 모임에 지구형제회회장의 참석이 불가능할 때는, 회헌, 제52조 1항 c에 의거 지구형제회 부회장이 대리로 참석한다.
 - b. 만약 지구형제회 회장과 지구형제회 부회장 모두가 참석 불가능할 때는, 지구형제회 집행평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평의원 한 명이 지구형제회의 대리자로 참석하여 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4. 어떤 지구형제회도 상정된 안건이나 선거권 행사에서 1회 이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동일한 이름으로 1개 이상의 직책이 있어, 한번 이상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도 투표권 행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참조. 교회법, 제168조].
6. 국가형제회의 선거 총회 기간 중,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의 퇴직 평의원들과 또 아직 공식적으로 취임하지 않았더라도 신규 평의원들은 그 총회가 끝날 때까지 국가형제회 평의회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9조. 정족수, 과반수, 개표, 절차 (Quorum, Majority, Counting Ballots, Procedure)

1. 국가형제회 평의회나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는 정족수가 참석해야만 공적인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정족수란 투표권 소지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일컫는다 [참조. 회헌, 제77조 4항].
2. 때로는 절대과반수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과반수는 전체 투표 숫자의 반 이상을 일컫는다. 상대과반수 혹은 단순과반수는 선거에서 또는 제안동의에 대한 투표결과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일컫는다 [참조. 교회법, 제119조].
3. 교회법이나 회헌에, 혹은 국가형제회규정에 포함 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로버트식 회의진행법을 참고할 수 있다. 이는 선거총회의장이, 즉, 재속프란치스칸 사회자가, 조언을 받은 후,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 선거 (Elections)

1. 선거는 회헌, 제76 조의 규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2. 국가형제회 평의회는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와 재속프란치스칸 평의원들을 선출한다.
3. 국가형제회 국제 평의원은 국가형제회 평의회에 의해서 선출되며, 국제형제회 규정에 준하여 재속프란치코 국제형제회 (이후는 CIOFS로 표시) 일원으로서의 NAFRA를 대표한다.
4. 국가형제회 평의회는 국가형제회 국제 평의원이 CIOFS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미 선출된 국가형제회 집행평의원들 중에서 국제 평의원 대리를 선출한다 [참조. CIOFS 규정, 제5조 2항].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형제회 회장은 이 사실과 함께 대리대표를 CIOFS 회장단에게 알려야 한다 [참조. CIOFS 규정, 제8조 1항].
5. 국가형제회 국제 평의원 직의 선거총회 소집 및 후보자 추천은 본 국가형제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행한다.
6. 투표는 비밀 투표로 투표용지에 서면으로 하며 선거인 일인당 한 표씩 제출한다.

투표가 유효 하려면 빈 투표용지를 포함한 모든 투표용지의 숫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참조. 교회법, 173조 2항].

제11조. 선거총회 소집 및 후보자 추천 (Convocation and Nominations)

1.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는 자체적으로 새운 규범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4개월 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할 것이며 예정된 선거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 전까지 국가형제회 평의회에 국가형제회 집행평의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할 것이다.
2. 국가형제회의 직책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자의 자격은, 종신 서약 자로서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활동 회원이어야 된다 [참조. 회헌, 제30조]. 후보자들은 프란치스칸 복음적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교회와 사회에 대한 원대하고, 폭 넓은 비전에 관심을 기울이며, 대화의 문이 열려있고, 협조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회원이어야 된다 [참조. 회헌, 제31조 3항].
3. 후보자가 추천된 직책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 직책의 임무를 검토해 보았는지, 만일 선출되었을 때 기꺼이 봉사할 자세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지명 위원회의 임무이다.
4. 국가형제회의 직책에 선출된 이는 그 누구도 지구형제회나 단위형제회의 선출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참조. 제28조].
5. 선거 목적의 국가형제회 평의회 소집은 회헌, 제76조에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6. CIOFS 로 보내는 통보
 - a. 국가형제회 회장은 적절한 시기에 재속프란치스코회 총장에게 연락을 취하여 본인이나 혹은 그의 대리자가 차기 선거를 주관할 것을 청해야 한다.
 - b. 국가형제회 회장은 적절한 시기에 영적보조자 협의회 회장에게 연락을 취하여 본인이나 혹은 대리자가 교회 증인의 자격으로 선거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12조. 선거총회 투표권 (Right to Vote at Elections)

선거 총회에서 투표권에 관한 사항은 본 국가형제회 규정, 제8조에 명시되어있다.

제13조. 평의원 임기 (Terms of Office)

회헌 제79조에 명기된 내용에 덧붙여 다음의 내용이 적용된다.

1. 임기
 - a.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에 선출된 재속프란치스칸들의 임기는 3년이다.
 - b. 국가형제회 국제 평의원의 임기는 국제형제회 규정, 제5조 4항에 의한다.
 - c. 국가형제회 영적보조자 회장의 임기는 협의회 회원들이 정한다.

2. 국가형제회 평의원의 직책이나 (국가형제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책), 국가형제회 국제 평의원의 직책이 연속 3회의 재임을 위하여 행해지는 마지막 세 번째 선거에서는, 첫 번째 투표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득표가 필요하다.
3. 퇴임하는 국가형제회 회장은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의 어떤 직책에도 선출될 수 없다 [참조. 제28조].

제14조. 투표 절차 (Procedure in Voting)

1. 투표는 국가형제회 회장의 직책을 시작으로 하여, 한 직책 투표가 종료된 후 다음 직책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첫 번째 직책에 선출되지 못한 사람은 남은 직책 후보로 지명 될 수 있다.
2. 선거총회 장에서는 추가지명이 받아들여지거나 최소한도 추가지명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한다.
3. 선거절차는 회헌, 제76조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국가형제회 평의원의 선거는 회헌, 제78조 1항에 규정된 방식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15조. 공석, 사임, 해임을 위한 규정 (Provisions for Vacancies, Resignations, and Removals)

1. 국가형제회의 회장이나 부회장이 사임하거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회헌 제81조 1항, 2항, 그리고 제83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는다.
2. 국가형제회 평의원 직이 공석이 될 경우에는 집행평의회가 그 직책의 잔여기간을 대행할 대리인을 임명한다. 만일 그 피임명자가 기존의 선출된 평의원일 경우에는 계속 투표권을 지니며, 만일 피임명자가 선출 평의원이 아닐 경우에는 투표권 없이 봉사한다.
3. 정당한 사유에 의해 국가형제회 회장이나 국가평의원들을 해임할 때는 회헌, 제84조에 명시된 규정을 따른다.
4. 직무에서 해임된 평의원의 항소 절차도 회헌 제84조 4항에 의거한다.

제 3 장 (Section III) **형제회 생활 (Fraternal Life)**

제16조. 형제회 생활 (Fraternity Life)

1. 재속프란치스코회 성소의 본질에 관한 설명은 회헌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 형제적 삶은 그 활력과 지구력과 함께, 지구와 단위형제회 뿐만 아니라 국가형제회에도 실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형제회는 우수한 리더십과 조직으로 구성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력을 얻고, 영속적인 양성과 영적 보조의 도움으로 성장함으로써 진정한 형제회로서의 목표를 달성한다. 각 지구와 단위형제회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3. 형제회들은 자신들이 지역 교회 내에서 지역 사도적 활동을 수행하는 한, 관구 주교의 불침번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속 프란치스칸들은 관구 주교들과 대화해야 하며 관구주교들의 지침에 따라, 그 주교들이 말씀 선교사업의 중재자가 되게 하고, 전례와 교구 교회 내의 다양한 사도적 사업의 조정자가 되게 해야 한다 [참조. 회칙 제6조].
4. 미국 내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외적 표지는 타우 십자가이다.

제17조. 형제적 방문과 사목적 방문 (Fraternal and Pastoral Visitations)

1. 형제적, 사목적 방문에 관해서는 회헌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그리고 영적보조 규정, 제14조에 적용된다.

제18조. 단위형제회 (Local Fraternity)

1. 단위형제회는 회원들이 관계되는 재속프란치스칸 삶을 위한 전체 구조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조직이다 [참조. 회칙, 제22조].
2. 회헌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새 형제회의 교회법적 설립 절차와 새 형제회의 사목을 담당할 프란치스칸 관구가 결정된다 [참조. 영적보조 규정, 제6조 1항, 제11조 2항].
3. 각 단위형제회 평의회는 회헌 제49조 1항에 준하여 구성된다. 영적보조자로 봉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영적보조 하는 형제회에 관해서는 프란치스칸 수도회의 영적보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조. 영적보조자 규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3조, 그리고 제24조]. 재속 프란치스칸인 평신도 영적보조자는 자신이 영적보조 하는 형제회에서 다른 평의원 직책에 선출될 수 없다.
4. 단위형제회는 사목권을 다른 1 회 관구나 정규 삼회 관구로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채택한다 [참조. 회헌, 제 47조 2항; 영적보조 규정, 제 6 조 2 항]:
 - a. 단위형제회 평의회와 회장은 지구형제회 집행평의회에—지구형제회 영적보조자(들) 포함—형제회 소속 수도회 이전 지원서를 제출한다. 지구형제회 집행평의회가 지구형제회 영적보조자(들)과 함께 이 신청을 승인할 경우, 지구형제회 영적보조자는 이전에 관련된 양쪽의 관구장들이나 관구 영적보조자들에게 이전을 청원한다.

- b. 사목적 도움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양쪽 수도 관구의 관구장들이나 관구영적보조자들은 한 단위형제회를 한 관구에서 다른 관구로 이전하는 절차를 주도할 수 있다. 이 때, 관구장들과 관구 영적보조자들은 단위형제회와 지구형제회의 영적보조자들을 포함한 평의원들의 자문을 받아 일을 진행한다.
- 5. 단위형제회 내 부서나 단체 설립
 - a.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나 공동 관심사로 인하여 하나 혹은 여러 그룹이 단위형제회 내에 영구적인 부서를 설립하길 원한다면, 단위형제회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참조. 회헌 50조 2항d]. 이때 그들은 단위형제회의 형제적, 사도적 활동에 계속해서 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구형제회는 그러한 부서나 단체의 설립에 대해 통보를 받아야 한다.
 - b. 이러한 단체들은 단위형제회의 한 조직으로 남아 있게 된다 [참조. 회헌 제34조].
- 6. 단위형제회의 회의에서 정족수의 참석 없이는 어떠한 공적 업무도 처리/집행될 수 없다. 여기서 정족수란 적법한 절차를 밟아 회의 참석을 면제받은 회원들을 제외한 활동 회원들 숫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 7. 단위형제회는 형제회 운영을 위한 공동기금에서 적절한 분담금을 책정하여 지구형제회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 회헌 제30조 3항]. 적절한 분담금이란 현재의 활동 회원 수와, 재정지원 의무를 면제 받은 형제자매들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된다. 그러나 장기 결석자는 보고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a. 활동 회원이란 형제회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특별히 재정지원의 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체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회원들을 일컫는다.
 - b. 형제회 여러 모임에 참석하지 않거나, 공동체를 재정 지원하지 않거나, 건강, 가족, 직장, 혹은 거리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형제회 복귀를 위한 개인적 초청에 의식적으로나, 고의적으로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회원은 “회원 자격 상실자”라고 지칭될 것이다. 이들은 형제회원 명단에서 제명되며, 상급 형제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참조. 회헌, 제53조 3항].
- 8. 지구형제회 회장이거나 그 대리인, 그리고 지구형제회 영적보조자나, 지구형제회 영적보조자 협의회 대표가 형제적 방문, 사목적 방문, 선거주관, 선거 증인을 위해 단위형제회를 방문할 때, 단위형제회는 그들에게 임무 수행을 위해 체류한 기간과 여행에 적합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 9.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활동들은 단위형제회에 있다. 그러므로 단위형제회 평의회는 회원들에게 프란치스코 삶과 영성을 고무시키는 데 도움이 될만한 사고개발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일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0.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에 출석 하지 못하는 경우, 평의회는 정기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조. 회헌, 제53조 3항].

11. 본 국가형제회 규정 중 국가형제회의 책임을 다룬 장 안에서 언급된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은 단위형제회에도 적용하되 단위형제회의 특별한 요구나 조건을 참작할 수 있다.
12. 회헌, 제54조 2항에서 요구 하는 바와 같이,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는 단위형제회가 법인의 목적과 내부 감사 등을 위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서류들을 인가해야 한다.
13. 단위형제회와의 결연
 - a.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프란치스칸 원리와 가르침을 따라 프란치스칸의 삶과 활동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회헌, 제 53조 2항), 활발하고 효과적인 친교를 위해, 단위형제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결연을 원하는 사람은 단위형제회 평의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단위형제회 평의회는 그 청원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 b. 이러한 결연 형제자매들은 재속프란치스코회와 어떤 법적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단지 “주님의 선물이며 그리스도의 모상” 으로 사랑하고 사랑 받도록 환영 받는 존재가 될 뿐이다 (회칙 제13조). 그들은 투표권 없이 형제회의 체험과 활동을 함께 나눈다.
 - c. 형제회의 정체성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러한 결연 형제자매의 수는 형제회 활동 서약 회원 숫자의 40%를 넘지 않게 한다.
 - d. 지구형제회 평의회는 결연 수용여부에 관한 자체적인 지침을 세울 수 있다.

제19조. 양성 (Formation)

1. 오리엔테이션 (Orientation)
 - a. 오리엔테이션은 초기 양성과정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관심도, 적격 성, 그리고 지향을 결정하는 시기이다 [참조. 재속프란치스코 미국 국가형제회 초기양성 지침서, 25 쪽 (이제부터는 “초기양성 지침서” 라 칭함)].
 - b. 오리엔테이션 기간은 최소한 3개월이 되어야 한다.
2. 초기양성 (Initial formation)
 - a. 지원기(Inquiry): 소개 및 환영예식과 [참조. 재속프란치스코 미국 국가형제회예절서 9 쪽] 함께 시작되는 지원기는 적어도 6개월이 되어야 한다.
 - b. 입회기(Candidacy): 적어도 18개월이 되어야 하고 36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 c. 초기양성 과정에 있는 모든 이들은 양성학습에 참여함은 물론 단위형제회 모임에도 참석해야 한다. 이는 공동체 기도와 형제회 생활로 들어가는 데 있어 필요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참조. 회헌, 제40조 3항].
 - d. 미국에서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려는 사람은 가톨릭교회에 온전히 입문하여 활동하고 있는 가톨릭 신자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례성사와 견진 성사를 받았고, 성체성사를 실행하는 신자).

3. 서약 (Profession)
 - a. 미국에서 재속프란치스칸으로 종신서약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21세이다.
 - b. 미국에서 재속프란치스칸으로 유기 서약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이다.
4. 영속적 양성 (Ongoing Formation)

영속적 양성은 회헌, 제44조에 부응하는 모든 서약자들에게 부여된 책임이다.
5. 형식과 방법론 (Form and Methodology)
 - a. 초기 및 영속적 양성에 사용하는 형식은 (즉, 내용과 과정. 참조. 회헌, 제38조 2항) “초기양성 지침서”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b. 양성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그 본질에서 상호 교류적이며 체험적이어야 된다 [참조. 회헌, 제40조 4항].
 - c. 여러 형제회가 영속적 양성과 초기양성을 공동의 목표로 하는 만남의 기회는 모든 등급의 형제회에서 가능할 때마다 주어지도록 한다 [참조. 회헌, 제40조 1항].
6. 원거리 초기양성을 위한 규정 (Provisions for Remote Initial Formation)

간혹 어떤 이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단위형제회의 정규적인 양성과정 참석이 어려울 때는 2000년 6월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가 채택한 “미국 내 원거리 거주자들을 위한 초기양성 지침서” 를 참조하여 양성 교육이 실시될 수도 있다.

제20조. 형제회와 재속프란치스코회로부터의 진출, 잠정적 퇴회, 정지처분 및 제명 (Transfer, Withdrawal, Suspension and Dismissal from the Fraternity and from the Order)

형제회와 재속프란치스코회로부터의 진출, 잠정적 퇴회, 정지처분, 제명 시 적용되는 방법과 수단은 회헌,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의 조항에 기준을 둔다.

제21조. 지구형제회 (Regional Fraternity)

1. 지구형제회는 회헌, 제61조에 의하여 설립된다.
2. 각 지구형제회의 집행 기구는 지구형제회 평의회이다. 지구형제회 평의회가 휴회 시는 지구형제회 집행평의회가 지구형제회 평의회를 대표한다 [참조. 회헌, 제66조 1항].
3. 지구형제회 영적보조자나 지구영적보조자 협의회는 NAFRA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일부 구성요소로서 국가형제회 영적보조자 협의회가 NAFRA에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각 지구형제회를 위해 사목적 배려와 영적 길잡이 역할을 수행한다 [참조. 영적보조자 규정 제21조, 제22조].

제 22 조. 지구형제회 평의회 (Regional Fraternity Council)

1. 지구형제회 평의회는 지구형제회를 구성하는 단위형제회 회장들, 지구형제회

집행평의회, 지구형제회 영적보조자, 또는 지구형제회 영적보조자 회의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투표권이 있다. 그러나 지구형제회 영적보조자는 재정 문제 안건이나 선거총회에서는 투표권이 없다 [참조. 영적보조자 규정 제12조 11항].

2. 지구형제회 평의회는 지구형제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위형제회들을 대표하는 기구이며, 회칙과, 회헌, 그리고 국가형제회 규정에 따라 일치하는 지구형제회 지침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지구형제회 평의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회합을 가져야 하며, 3년마다 회헌과 국가형제회 규정에 준한 선거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4. 지구형제회 평의회의 임무는 회헌, 제 62조에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지구형제회 집행평의회(Regional Executive Council)

1. 지구형제회 평의회의 휴회 기간 동안, 선출된 지구형제회 집행평의회가 사도 직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구형제회 평의회의 일상 업무와 사업 목표를 수행한다 [참조. 회헌, 제62조 1항].
2. 지구형제회 집행평의회는 지구형제회 회장, 지구형제회 부회장, 지구형제회 서기, 지구형제회 회계, 적어도 한 명의 선출된 평의원, 지구영적보조자 또는 지구영적보조자 협의회 회장으로 구성된다. 추가로, 지구형제회 양성담당을 선거에 의해 선출 될 수도 있다. 양성담당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 경우 양성담당은 지구형제회 집행평의회에 참석하여 상담 역할을 수행한다.
3. 선거에 의해 선출된 모든 지구형제회 집행평의원들과 영적보조자는 투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지구형제회 영적보조자는 재정 문제 안건이나 선거총회에서는 투표권이 없다.
4. 지구형제회 집행평의회의 재속회원 평의원들의 선출 방법은, 본 국가형제회 규정, 제2절에 나와 있는 국가형제회 선거 모델을 따르되 지구형제회의 필요나 처한 환경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5. 지구형제회 집행평의회는 지구형제회 평의회에서 결의된 목표나 목적 성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분과위원회나 협의회를 설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
6. 휴회 중일 때, 지구형제회 집행평의회는 업무를 전산망 (즉, 이 메일, 전화, 팩스 등)을 이용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 안건은 차기 정기 평의회에서 검토되고, 재가 되어야 한다.
7. 지구형제회 집행평의회는 적어도 년 2회 회합을 가져야 하며, 시간과 장소는 집행평의원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구형제회 회장은 적어도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회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지구형제회 집행평의원들의 임무 (Duties of Officers of the Regional Executive Council)

1. 지구형제회 회장의 임무는 회헌, 제63조에 제정되어있다.
2. 지구형제회 부회장, 서기, 회계의 임무는 국가형제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모델을 따르되 지구형제회의 필요와 환경에 적합하게 조절할 수 있다.
3. 선출 평의원들의 사퇴 또는 해임에 관한 방침과 절차에 관해 각 지구형제회는 본 국가형제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모델을 따라야 한다.

제25조. 지구형제회 재산 관리 조직 (Structure for Property Control for the Regional Fraternity)

1. 지구형제회의 재산 관리는 국가형제회 재산 관리 규정 조항을 지구형제회의 필요와 환경에 적합하게 조절할 수 있다.
2. 지구형제회 집행평의원들과 지구형제회를 위하여 집행평의회가 초대한 이들이 규정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는 지구형제회가 부담한다.
3. 지구형제회는 NAFRA의 제반 경비 충당을 돕기 위해 합당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4. 회헌, 제54조 2항에 의하여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는 지구형제회가 법인격을 취득할 때 사용될 "법인의 목적"과 "내부 감사"를 위한 "정확한 기준"을 정하는 서류를 인가한다.

제 26조. 지구형제회에 대한 형제적, 사목적 방문 (Fraternal and Pastoral Visits to the Regional Fraternity)

1. 형제적, 사목적 방문에 관한 회헌, 제 92조에서 제95조까지의 조항은 영적보조자 규정, 제14조에 명기된 조항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지구형제회는 국가형제회 회장이나 그의 대리자 그리고 국가형제회 영적보조자 협의회 회장 또는 그 대리자가 형제적, 사목적 방문이나, 선거총회의 의장이나 참관인으로 방문 시 그들의 체류기간에 합당한 경비를 지불한다.

제27조. 프란치스칸 청년회 (Franciscan Youth and Young Adults)

회헌, 제96조, 제 97조 조항이 지구형제회 청년회에도 적용된다.

제28조. 각급 형제회에 대한 본 규정의 적용 (Applicability of These Statutes to All Levels of Fraternity)

NAFRA 행정을 위해 본 규정에 명기된 조항들은 모든 등급의 형제회의 선거, 일상업무 수행, 재산관리 구조, 형제회 회장과 형제회 평의회의 구성 및 임무, 유고시의 평의원 교체 등 유사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모델로 쓰여져야 한다. 지구형제회 평의원은 단위형제회 평의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형제회 규정,

제11조 4항과 제13조 3항은 지구나 단위형제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9조. 수정 (Amendments)

1. 본 국가형제회 규정은 국가형제회 평의회 2/3 찬성으로 수정될 수 있다. 단, 수정안 복사본이 그 표결일로부터 적어도 60일 이전에 국가형제회 평의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 모든 수정안들은 CIOFS 회장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02 년 10 월 18 일 재속프란치스코 미국 국가형제회 평의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2003 년 6 월 6 일 재속프란치스코 미국 국가형제회 평의회에 의해 수정안이 승인되었다.

2003 년 7 월 4 일 재속프란치스코 국제형제회 의장단에 의해 승인되고 확인되었다.

2004 년 5 월 11 일 재속프란치스코 미국 국가형제회 평의회에서 수정안이 승인되었다.

2004 년 6 월 12 일 재속프란치스코 국제형제회 의장단에 의해 확인되었다.

2004 년 10 월 22 일 재속프란치스코 미국 국가형제회 평의회에 의해 수정안이 승인되었다.

2005 년 1 월 8 일 재속프란치스코 국제형제회 의장단에 의해 승인되었다.

2006 년 10 월 27 일 재속프란치스코 미국 국가형제회 평의회에서 수정안이 승인되었다.

한글 번역 및 감수 (Korean Translation and Editorial Review)

2006 년 2 월 1 일 재속프란치스코 미국 국가형제회 규정의 1 차 한글번역을 완성했으며 2010 년 2 월 10 일 이를 수정했다. (Translated these NAFRA Statutes into Korean on February 1, 2006 and made amendments on the first translation on February 10, 2010.)

1 차 번역 (Initial translation): 이헌일 어거스틴 (Augustine Hunil Lee), SFO, 공인 영적보조자 (Certified Spiritual Assistant)

감수 (Reviewed by):

김인중 요한 (John Injoong Kim), SFO

이윤경 미셸 (Michelle Yoon-Kyung Lee Kim), SFO

**** 주의사항 (Attention):**

재속프란치스코 미국 국가형제회 규정 한글 번역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때는 원 영어 본을 따르십시오. (Please follow the original NAFRA Statutes in English whenever there are disputes on the semantics.)